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시행 2024.8.2] [서울대학교규정 제2528호, 2024.8.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별 법학분야 연구의 심화
2. 문제해결 지향의 법학 분야 간 공동연구 [개정 2020. 10. 22.]
3. 인접학문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 [개정 2020. 10. 22.]
4. 산·학·연 공동연구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협력
6. 학문후속세대 지원
7.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보급

[전문개정 2015. 2. 16.]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 또는 관련 학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 8. 3., 2008. 5. 9., 2013. 4. 24., 2020. 10. 22.]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0. 22.]

③ 연구소에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8. 5. 9] [개정 2013. 4. 24., 2020. 10. 22.]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리고 부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0. 22.]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 연구부, 간행부, 법률자문실,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공익산업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통상·거래법센터, 경쟁법센터, 환경·에너지법센터, 헌법·통일법센터, 건설법센터, 고용복지법센터, 법과경제연구센터, 법이론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4. 1. 16., 2006. 8.3., 2007. 8. 6., 2008. 5. 9., 2009. 8. 7., 2010. 7. 21., 2011. 1. 17., 2013. 4. 24., 2014. 4. 9., 2015. 2. 16.]

② 각 부·실 및 센터에 장을 두며, 연구부와 간행부에 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각 장 및 연구부와 간행부의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5. 9., 2013. 4. 24., 2020. 10. 22.]

③ 각 부·실 및 센터는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 법학 각 분야의 연구사업의 수행과 연구발표의 주선, 그 밖의 법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22.]
2. 간행부: 학술활동 및 연구성과의 공적 간행,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8. 3.,

2020. 10. 22.]
3. 법률자문실: 법의 실제(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자연인 및 법인의 법률 문제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22.]
 4. [삭제 2006. 8. 3.]
 5. 금융법센터: 은행, 증권, 보험을 비롯한 금융의 거래 및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4. 23.][개정 2020. 10. 22.]
 6. 기술과법센터: 과학과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 등에 의한 기술의 보호, 자연 과학 및 공학과 법학의 학제 간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6. 11.][개정 2020. 10. 22.]
 7. [삭제 2015. 2. 16.]
 8. 공익산업법센터: 공익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8. 3.] [개정 2020. 10. 22.]
 9. 공익인권법센터: 공익의 증진과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한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8. 6.] [개정 2020. 10. 22.]
 10. 국제통상·거래법센터: 국제통상법 및 국제거래법과 관련된 법적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 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5.9.] [개정 2020. 10. 22.]
 11. 경쟁법센터: 경쟁원리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적 연구, 국내외 학술교류, 학제 간 연구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8. 7.] [개정 2020. 10. 22.]
 12. 환경·에너지법센터: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방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법적 연구, 국제환경 외교에 필요한 법적 논리 및 협상전략, 국내외 학술교류, 학제 간 연구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7. 21.] [개정 2020. 10. 22.]
 13. 헌법·통일법센터: 남북교류협력의 법적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관·학 합동연구,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법률전문가 양성과 재교육, 남북경협 등 현안이 되는 법적 쟁점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한 법률 비교·분석 등의 수행과 세미나,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21.][개정 2020. 10. 22.]
 14. 건설법센터: 건축, 도시계획, 건설소송, 재건축·재개발, 주택, 하자담보 등 건설법 분야의 법과 제도 개선, 건설법전문가 양성, 국내외 학술교류, 학제 간 연구 및 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 17.] [개정 2020. 10. 22.]
 15. 고용복지법센터: 고용관계와 복지법 등의 연구, 학제 간 연구, 연구에 대한 아시아의 허브 구축, 전문법률가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교류·자료수집·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4. 24.] [개정 2020. 10. 22.]
 16. 법과경제연구센터: 법경제학 및 시장 규율 관련 법분야의 연구, 경제학·경영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 법경제학 전문 법률가 양성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교류, 자료수집과 정리 등의 사업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4. 9.] [개정 2020. 10.

22.]

17.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분야에 대한 연구·출판·학술발표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6.] [개정 2020. 10. 22.]

18. 입법연구센터: 입법분야의 학제적 연구, 학계와 국가기관 및 산업계 등을 연계한 입법 플랫폼 구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8. 2.]

19. 행정실: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7. 8. 6., 2008. 5.9., 2009. 8. 7.,2010. 7. 21.,2015. 2. 16., 2020. 10. 22., 2024. 8. 2.]

④ [삭제 2020. 10. 22.]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5. 9.]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8. 3., 2008. 5. 9., 2013. 4. 24., 2020. 10. 22.]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5. 9.]

④ [삭제 2008. 5. 9.]

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22.]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6. 8. 3., 2008. 5. 9.,2013. 4. 24.,2014. 4. 9., 2020. 10. 22.]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2.]

2.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 10. 22.]

3.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 10. 22.]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10. 2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5. 9., 2020. 10. 2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가 발간하는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 8. 3.]

제8조(공개강좌)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학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2.]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2.]

부칙 <제156호, 1969.9.27.>

이 규정은 196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 1970.5.6.>

이 규정은 197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 1971.9.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1975.12.5.>

이 규정은 197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1983.4.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 1986.6.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199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1992.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4호, 2002.4.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8호, 2003.6.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 2004.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호, 2006.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호, 2007.8.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 2008.5.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호, 2009.8.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호, 2010.7.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 2011.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호, 2013.4.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호, 2014.4.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호, 2015.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 2020.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호, 2024. 8.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